

# 일본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거시적 환경에 관한 고찰

## A Study for Macro-Environment of Japanese School Libraries

이 원 숙(Won-Sook Lee)\*

### 〈 목 차 〉

- |                              |                             |
|------------------------------|-----------------------------|
| I. 서론                        | 6. 학교도서관 활성화 추진 종합사업        |
| 1. 연구의 목적                    | IV. 학교도서관 발전의 원동력이 된 표준과 기준 |
| 2. 선행 연구 및 연구의 필요성           | 1. 학교도서관 도서표준               |
| II. 학교도서관 발전의 기반이 되는 법률과 정책  | 2. 학교도서관 도서 폐기 기준           |
| 1. 학교도서관 관계 법령과 정책의 연혁       | 3. 학교도서관 평가기준               |
| 2. 학교도서관 발전의 기반이 되는 법률과 정책   | 4. 학교도서관 홈페이지 평가기준          |
| III.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        | V.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
| 1. 학교도서관 정보화·활성화 추진 모델 지역 사업 | 1. 도서관 현황에 관한 조사            |
| 2. 학교도서관 자원공유 네트워크 추진사업      | 2. 학교 독서 조사                 |
| 3. 학교도서관 도서정비 5개년계획          | VI. 요약 및 결론                 |
| 4.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추진 사업          | 1. 요약                       |
| 5. 어린이 독서 응원 프로젝트            | 2. 결론                       |

### 초 록

90년대는 일본 학생들의 문자이탈 현상 및 그에 따른 독해력 저하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던 독서의 위기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전환점으로 삼아 학교도서관 및 관련 기관들은 관련 법률을 제정·개정하고, 학교도서관 및 독서관련 사업을 펼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어린이 독서활동의 환경 정비에 주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9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된 학교도서관을 둘러싼 독서환경 정비를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들을 소개하고 정리함으로써 일본 학교도서관의 거시적 환경을 이해하고 한국의 학교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고한다.

키워드: 일본의 학교도서관, 독서활동, 학교도서관법, 학교도서관 사업, 학교도서관 표준

### ABSTRACT

In the 90s, due the Japanese students' degradation in reading comprehension from literacy escape, it was serious social phenomenon that brought reading crisis in Japan. However, school libraries and related institutions regarded this as a turning point and started to reset·revise their legislations and focused on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children's reading activities from various aspects by conduction reading related activities. This study is to help understanding macro-environment of Japanese school libraries by introducing and summarizing all the efforts from each fields for restructuring reading environment mainly around the school libraries from 90's in Japan.

Keywords: School Libraries in Japan, Reading Activities, School Library Legislation, Activities of School Library, Standard of School Library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 강사(wonsook.lee@gmail.com)

• 접수일: 2011년 11월 24일 • 최종심사일: 2011년 12월 3일 • 최종심사일: 2011년 12월 28일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최근 일본에서는 학교도서관과 독서에 관련된 법이 제정되고, 기존의 법들이 시대의 상황이나 교육 여건에 맞추어 개정되었다. 학교도서관의 정보화 사업을 시작으로 9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인 학교도서관 관련 사업이 각 지자체에서 문부과학성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 노력으로 학교도서관에 관련된 다양한 기준과 표준이 제정되어, 부족한 학교도서관의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기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기관간의 성과를 공유하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려는 노력 또한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은 제2의 학교도서관 부흥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기의 법률, 사업, 기준 등은 도서관의 외적 요소로 학교도서관의 거시적 환경이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학교도서관의 발전의 토대가 된 이러한 학교도서관의 거시적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학교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고하는 데 있다.

### 2. 선행 연구 및 연구의 필요성

학교도서관의 거시적 환경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외국의 학교도서관 기준 및 평가지표를 소개·분석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지표를 제시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95년 김효정은 미국의 학교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기준의 발전 과정과 그들이 실제 학교교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한국의 학교도서관 기준 설정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고,<sup>1)</sup> 광철완과 최재황은 미국 연방정부의 학교도서관 지원 법률과 학교도서관 기준이 학교도서관 발전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조사하였다.<sup>2)</sup> 송기호는 IFLA/UNESCO의 학교도서관 기준 등과 같은 국제적 수준의 학교도서관 기준의 단어를 분석하여 학교도서관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정리하였다.<sup>3)</sup> 이병기는 2007년에 제정된 미국의 학교도서관 기준 관련 문서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과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였으며,<sup>4)</sup> 박명규는 미국 학교도서관 국가기준과 주 단위 기준을 고찰하고, 학교단위의 학교도서관에서 구체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도서관 수업을

1) 김효정,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의 변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8권(1995), pp.167-191.

2) 광철완, 최재황, "미국 학교도서관 발전에 있어서 연방 법률과 학교도서관 기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2호(2008), pp.109-124.

3) 송기호, "학교도서관 기준의 사명과 비전에 나타난 핵심 가치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3호(2009), pp.225-247.

4) 이병기,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 관련 문서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구조와 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3호(2009), pp.203-223.

전개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sup>5)</sup>

이러한 외국 사례의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 학교도서관의 거시환경에 관한 다양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특히 학교도서관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논문이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다. 이 중 몇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남영준은 기존의 학교도서관 관련 평가지표 및 법률 등을 참고하여 8개의 영역에서 48개의 평가지표를 제시하였으며,<sup>6)</sup> 박철완과 노영희도 국내·외 학교도서관 관련 평가지표를 조사·분석하여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 평가에 필요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sup>7)</sup> 이재원과 조현양은 학교도서관 정책과정을 교육정책 평가모형에 근거하여 정책의 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과정으로 구분하여 문헌정보학의 시각이 아닌 정책학·행정학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틀을 개발하고, 이 틀을 이용하여 학교도서관 정책을 과정별로 평가하였으며, 아울러 학교도서관 정책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나은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sup>8)</sup> 이 외에 학교도서관 평가체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로는 변우열 외의 논문<sup>9)</sup>과 김성준의 논문<sup>10)</sup>이 있다.

학교도서관 관련 사업에 관한 것으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추진현황, 성과 및 전망 등을 연구한 논문들이 대표적인 선행연구라 할 수 있는데, 변우열<sup>11)</sup> 박철완과 장윤금,<sup>12)</sup> 노영희,<sup>13)</sup> 권은경<sup>14)</sup> 등에 의해 발표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학교도서관 기준에 관한 연구로는 한국의 7가지 학교도서관 기준을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학교도서관 기준의 개선안을 제안한 목수정의 2011년도의 논문이 있다.<sup>15)</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의 거시적 환경을 다룬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외국의 사례들도 다양한 논문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 사례의 경우 미국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며,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 관한 연구는 1996년 김효정<sup>16)</sup>의 연구와 같이 비교 연구

5) 박명규,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과 적용 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4권, 제2호(2003), pp.83-95.  
 6) 남영준, “학교도서관의 새로운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3호(2010), pp.99-131.  
 7) 박철완, 노영희, “학교도서관 평가지표 개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 제20권, 제2호(2009), pp.183-196.  
 8) 이재원, 조현양, “학교도서관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2호(2006), pp.97-126.  
 9) 변우열, 이병기, 김성준, “학교도서관 평가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1호(2011), pp.51-73.  
 10) 김성준, “학교도서관 평가지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3호(2011), pp.5-26.  
 11) 변우열,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3호(2004), pp.139-173.  
 12) 박철완, 장윤금,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 효과에 대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4호(2006), pp.143-160.  
 13) 노영희,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 분석 및 평가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07), pp.243-271.  
 14) 권은경,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성과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10), pp.319-341.  
 15) 목수정,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2권, 제2호(2011), pp.221-234.  
 16) 김효정, “영국·미국·일본의 학교도서관 기준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25권(1996), pp.51-82.

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sup>17)18)</sup> 단독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한국의 학교도서관 발전 모형으로 삼을 수 있는 다양한 국가들의 거시적 환경을 연구할 필요성을 느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학교도서관의 거시적 환경을 ① 법률과 정책, ② 사업, ③ 표준과 기준, ④ 실태조사로 구분하였으며, 문헌 및 사례조사를 통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II. 학교도서관 발전의 기반이 되는 법률과 정책

### 1. 학교도서관 관계 법령과 정책의 연혁

일본의 학교도서관 관계 법령과 어린이 독서활동 등의 연혁을 이하의 <표 1><sup>19)</sup>에 정리하였다. 1947년 『교육기본법』<sup>20)</sup>과 학교교육법(초)』<sup>21)</sup>의 제정을 시작으로 학교도서관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시작하였고, 1950년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가 결성되었다. 이 시기부터 각 학교에 학교도서관이 설치되기 시작하며, 일본 학교도서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표에 나타난 주요한 법률과 사업 등의 활동들은 각 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표 1> 학교도서관 관계법령 및 사업 등에 관한 연혁

날 짜	주요 활동	비 고
1947년	교육기본법 제정(법률 제25호)	2006년 개정
	학교교육법 제정(법률 제26호)	2007년 개정
1950년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 결성	
	도서관법(법률 제118호) 제정	2008년 일부 개정
1953년	학교도서관법(법률 제185호) 제정	1997년 일부 개정
1991년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 - 학교도서관 현장 채택	
1993년	문부성(당시) - 학교도서관 도서표준의 책정	
	학교도서관 도서정비 5개년계획 책정	2012년까지 총 3차에 걸쳐 실시
1994년	문부성의 독서에 관한 조사를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에 위탁	
1995년	국제어린이도서관 설립추진 의원연맹의 발족	어린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원연맹으로 변경
	학교도서관 정보화·활성화 추진 모델지역 지정	1995년-2000년
1996년	학교도서관 정비추진회의 설립	

17) 변우열, “학교도서관 자료기준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28권(1998), pp.61-91.

18) 김효정, “한국 학교도서관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권, 제1호(1997), pp.71-104.

19) 子どもと本をつなぐ人のページ, <<http://www.kodomo.go.jp/mediator/plan/plan.html>> [cited 2011. 10. 3].

20) 教育基本法, <<http://law.e-gov.go.jp/htmldata/H18/H18HO120.html>> [cited 2011. 11. 20].

21) 学校教育法, <<http://law.e-gov.go.jp/htmldata/S22/S22HO026.html>> [cited 2011. 11. 20].

날 짜	주요 활동	비 고
1997년	학교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법률제76호) 『학교도서관법 부칙 제2항의 학교의 규모를 정하는 정령(政令)』의 공포·시행	학교도서관법에 따라 12학급 이상 학교의 사서교유(司書教諭) <sup>22)</sup> 배치의 유예를 2003년 3월 31일까지 한다.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 - 6월 11일을 『학교도서관의 날』로 지정	
2000년	국제어린이도서관의 건립	
2001년	어린이 꿈 기금의 창설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어린이 독서활동 조성이 개시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平成13년 법률제154호)의 제정	
2002년	학교도서관 자원공유형 모델 지역사업의 개시	2001년-2003년
	학교도서관 도서정비 5개년계획의 책정	
2003년	어린이 독서활동의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제1차)의 각의(閣議) 결정	
	12학급 이상에 사서교유의 배치	1997년 학교도서관법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실현
2004년	학교도서관 자원공유 네트워크 추진사업	2004년-2006년
2005년	문자·활자 문화진흥법(平成17년 법률 제91호)의 공포·시행	
2006년	교육기본법의 개정(平成18년 법률 제120호)	교육기본법을 60년만에 전면개정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추진사업	2006년-2009년
2007년	학교도서관 도서정비 5개년계획의 책정	2007년-2011년
2008년	어린이 독서활동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 계획(2차) 각의 결정	
	도서관법 개정(平成20년 법률 제59호)	교육 중시
2009년	학교도서관 활성화 추진 종합 사업	2009년-20012년

## 2. 학교도서관 발전의 기반이 되는 법률과 정책

일본은 세계 최초로 학교도서관 단일 법령인 『학교도서관법』을 제정한 나라로, 학교도서관 관련 법률 제정에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최근 독서에 많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어린이와 성인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학교도서관 및 독서활동의 발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제적 장치가 다양한 단체의 노력에 의해 마련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의 결실인 일본의 학교도서관 및 독서활동에 관련된 법률을 소개한다. 아울러 학교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정책으로 『학습지도요령』도 함께 소개한다.

### 가. 도서관법<sup>23)</sup>

일본의 도서관법은 종래의 『도서관령 및 공립도서관직원령』을 대신하여 1950년(昭和25年)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총 9회<sup>24)</sup>에 걸쳐 개정되었다.

제1장 『총칙』, 제2장 『공립도서관』, 제3장 『사립도서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

22) 일본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에 대한 호칭으로, 학교도서관의 관리와 운영 등 전문직 직무를 담당하지만, 사서교유의 대부분은 학과 및 교과담당 등을 겸직하고 있다.

23) 図書館法, <<http://law.e-gov.go.jp/htldata/S25/S25H0118.html>> [cited 2011. 11. 2].

24) 최종 개정 : 2011년 8월 30일.

정의하고 있는 도서관은 '도서, 기록, 그 외의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며, 교양, 연구조사, 레크레이션 등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지방공공단체, 일본 적십자사, 또는 일반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이 설치한 것'을 의미하며, 학교에 부속된 도서관 및 도서관 시설은 제외된다. 그러나 본 법률 제3조 4항<sup>25)</sup>에서 공공도서관에서의 봉사는 학교도서관을 비롯한 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학교도서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이라 할 수 있다.

#### 나. 학교도서관법<sup>26)</sup>

1947년 제정된 「교육기본법」을 근거로 「학교교육법(초)」이 동년 3월 31일에 제정되었다. 「학교교육법시행규칙(초)」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1조에 '학교에는 그 학교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교지(校地), 교사(校舍), 교구, 운동장, 도서관 또는 도시실, 보건실과 그 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6년 후인 1953년 제정된 것이 바로 「학교도서관법」이다.

일본의 학교도서관법은 학교도서관의 단일 법령으로는 세계최초이며, 1958년 제1차 개정부터 2007년 제9차 개정까지 총 아홉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53년 공포 당시에는 전문 3장 15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진 법률이었으나 현재는 7조와 부칙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법률의 제1조에서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시설이므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학교교육을 충실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학교도서관의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제3조에서 '학교는 학교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설치의무에 관하여도 명기하고 있다. 사서교유의 배치에 관하여도 기술하고 있는데, 법 제정 당시 전문 사서교유의 부족 등의 이유로 '당분간 사서교유를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유예조항이 생겼으며, 이 조항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일본 학교도서관의 운영이 비전문 사무직원의 손에 맡겨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1997년 개정된 법에서 사서교유의 강습을 실시하는 대학에 그 외의 교육기관이 추가되었고, 부칙의 '당분간 사서교유를 두지 않는 것이 가능함'이라는 완화규정이 철폐되어 사서교유의 전면 배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sup>27)</sup>

이 외에도 학교도서관의 운영, 설치자의 의무, 국가의 의무에 관하여도 명문화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의 기본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 다.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sup>28)</sup>

어린이<sup>29)</sup>의 독서활동에 대한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보호자 등의 역할을 규정한 법률로,

25) 제1장 3조 4항 : 기타 도서관, 국립국회도서관,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에 설치된 도서관 및 학교에 부속되어진 도서관 및 도서관 시설과 긴밀하게 연락, 협력하며, 도서관 자료를 상호 대차함.

26) 學校図書館法, <<http://law.e-gov.go.jp/htmldata/S28/S28HO185.html>> [cited 2011. 11. 1].

27) 권은경, "일본의 학교도서관법 개정과 사서교사 제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2호(2004), pp.95-118.

28) 子ども読書活動の推進に関する法律, <<http://law.e-gov.go.jp/htmldata/H13/H13HO154.html>> [cited 2011. 11. 21].

어린이의 독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정비에 목적을 두고 2001년 제정되었다.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나라의 책무」, 제4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제5조 「사업자의 노력」, 제6조 「보호자의 역할」, 제7조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강화」, 제8조 「어린이 독서활동추진기본계획」, 제9조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계획 등」, 제10조 「어린이 독서의 날」, 제11조 「재정상의 조치 등」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1 차	2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가 독서에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의 제공</li> <li>• 어린이의 자주적인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환경의 정비</li> <li>• 어린이의 독서활동에 관한 계발과 추진체제의 정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과의 만남 제공</li> <li>• 즐기는 독서의 습관화</li> <li>• 책으로부터 배우는 힘의 양성</li> <li>• 독서에서 얻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의 제공</li> </ul>

정부는 이 법에 근거하여 약 5년을 주기로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각 지자체에서는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독서활동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있다. 〈표 2〉는 2002년 8월과 200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어린이 독서활동의 기본계획이며, 〈표 3〉은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1차)」을 근거로 작성된 기후현(岐阜縣)의 독서활동의 시책과 성과이다.<sup>30)</sup>

〈표 3〉 독서활동의 기본계획과 성과 - 기후현(岐阜縣)

시 책	성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 지원을 통한 독서활동의 계발 (유아 검진 및 가정교육 학급에서 실시)</li> <li>• 독서 자원봉사자 단체의 활동 지원 (자원봉사자 양성 및 활동 장소의 제공)</li> <li>• 학교도서관으로의 인적 배치의 추진</li> <li>• 공립도서관과 외부관계기관과의 연계 추진</li> <li>• 도서관 상호 네트워크화 및 인터넷 검색 서비스의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 활동에 대한 지역 어린이들의 관심과 이해의 고조</li> <li>•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공공도서관의 증가 (90.5%(2003년) → 100%(2008년))</li> <li>• 외부 관계기관과 연계하는 공립도서관의 수의 증가 (78%(2004년) → 97.1%(2008년))</li> <li>• 학교도서관 대출 책수의 증가</li> </ul>

이처럼 이 법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관련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도록 권장하면서, 각 지방단체의 환경과 특성에 적합하게 독서를 위한 환경을 정비하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sup>31)</sup>

29) 만18세, 고등학생까지의 청소년을 의미함.

30) 岐阜縣子ども読書活動推進計画(第二次), 〈<http://www.pref.gifu.lg.jp/kyoiku-bunka-sports/shakaikyoiku/jigyodokusho-katsudo/dokusyo.html>〉 [cited 2011. 11. 1].

31) 윤유라, 이제환, “일본의 독서교육에서 학교도서관의 의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4호(2010),

라. 문자·활자 문화진흥법<sup>32)</sup>

국민들의 급속한 문자·독서 이탈 현상에 대한 자구책으로 2005년 제정되었으며, 초당파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활자문화의원연맹(활자의맹)에 의해 의원입법되었다. 본 진흥법은 국민들에게 독서 문화 환경을 제공하고, 학교에서 읽고 쓰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법을 공포한 7월 29일을 활자문화의 날로 지정하였다.

이 법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이념」,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제6조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강화」, 제7조 「지역에 있어서 문자·활자문화의 진흥」, 제8조 「교육기관에 있어서 언어력의 함양」, 제9조 「문화·활자 문화국제 교류」, 제10조 「학술적 출판물의 보급」, 제11조 「문자·활자문화의 날」, 제12조 「재정상의 조치 등」의 전 12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학교도서관과 관련 있는 제8조 2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언어력 함양에 필요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사서교유 및 학교도서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충원 등 인적 체제를 정비하고, 학교도서관자료의 충실 및 정보화의 추진 등의 물적 조건의 정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법의 실효성을 위하여 「문자·활자 문화진흥법의 시행에 동반될 시책 전개」라는 제목으로 정책 목표도 함께 공포되었다. ‘문자·활자 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정치, 행정, 민간은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한다’로 시작되는 이 시책의 전개는 ① 지역에 있어서의 문자·활자 문화의 진흥, ② 학교교육에 관한 시책, ③ 출판활동 지원의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서 살펴본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결의한 본법과 정부가 책정하는 기본계획(시책 전개), 그리고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해야 하는 시책 등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sup>33)</sup>

이 중 ② 학교교육에 관한 시책에 학교도서관과 관련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학교교육에 관한 시책 중 학교도서관 관련 항목

학교도서관 관련 항목
학교도서관 도서표준의 달성, 학교도서관 도서정비비의 교부세 조치의 충실, 예산화
소규모 학교(12학급 미만)의 사서 교유의 배치, 학교도서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배치의 추진
사서 교유의 담당 수업의 경감, 전임화 등의 추진
고교 도서관의 충실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를 통한 학교간, 공립 도서관과의 연계 추진

pp.187-209.

32) 文字·活字文化振興法, <<http://law.e-gov.go.jp/htmldata/H17/H17HO091.html>> [cited 2011. 11. 22].

33) 권은경, “일본의 학교도서관 발전에 미치는 문고운동의 영향.”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제1호(2005), pp.105-126.



이 「시책의 전개」는 일본 학교도서관협의회가 수년간 주장하고, 바래오던 학교도서관의 충실과 활용, 어린이의 독서환경정비에 관련한 요구가 거의 망라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로 많은 가시적인 효과들이 여러 자치단체에서 나타났다. 도토리현(鳥取縣)의 경우, 2005년도부터 사서교유의 전임배치를 모델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배치하였으며, 문부과학성은 2006년부터 「학교도서관지원 센터추진사업」을 계획하는 등 부분적으로 구체화를 진행시켰다.<sup>34)</sup>

그러나, 상기의 두 법률(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 문자·활자 문화진흥법) 모두 국민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국가 및 공공단체 등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각각의 법률을 근거로 발표된 「독서활동 추진 계획」과 「문자·활자 문화진흥법의 시행에 동반될 시책 전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강제 의무 사항이 아니며, 지자체의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추진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독서활동 추진 계획」의 경우, 2009년 3월 현재 계획의 책정을 검토 중이거나 책정 계획이 전혀 없는 지자체의 비율(51.5%)이 이미 계획을 책정하였거나 구체적인 책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비율(48.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35)</sup>

또한 「어린이 독서활동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어린이 독서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역할<sup>36)</sup>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명시하고 있는 역할은 보호자에 대한 어떠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의 역할이 어린이의 독서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의 항목에서 밝히고 있는 나라의 책무,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역시 비슷한 상황이어서 이 법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지는 해당 지자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이 정부가 수립해 놓은 기본 계획의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여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역의 환경적 특성에 적합하게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자 했던 애초의 법 제정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sup>37)</sup> 그러나 국민의 독서활동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가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임을 숙지한 결과물이 이러한 법률로 표방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마. 학습지도요령

학습지도요령이란 초·중·고등학교 등이 학교의 각 교과에서 가르칠 내용을 학교교육법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한 것으로, 법적 구속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교과의 내용은 물론 학교

34) 石井宗雄, “言語力の涵養」に資する學校図書館,” 學校図書館, 通券第665号(2006. 3), pp.24-29.

35) 市町村子ども読書活動推進計画「策定状況」, <[http://www.mext.go.jp/b\\_menu/houdou/21/04/\\_icsFiles/afidfile/2009/04/16/1260800\\_2\\_1.pdf](http://www.mext.go.jp/b_menu/houdou/21/04/_icsFiles/afidfile/2009/04/16/1260800_2_1.pdf)> [cited 2011. 11. 22].

36) ‘부모 및 그 외의 보호자는 어린이들에게 독서활동의 기회를 충실히 제공하고, 독서활동의 습관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37) 윤유라, 이재환, 전개논문, pp.193-194.

현장의 운영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의 학습지도요령은 1968·9년, 1977년, 1989년, 1998년 등 약 10년의 간격으로 개정되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대의 커리큘럼의 기본을 결정지었다. 그러나 1998년 개정으로 학습저하 등의 비판이 있었고, 그 결과 5년 후인 2003년에 이례적으로 중간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서 2000년대 후반의 커리큘럼에 약간의 변경이 있었다. 그러므로 2008년에 이루어진 제8차 개정은 2010년대의 커리큘럼을 결정함과 동시에 2000년대의 교육과정에서 빚어진 행정의 혼란을 어떤 방식으로 수습할 것인가를 예언하는데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sup>38)</sup>

학교도서관 발전에 이러한 지도요령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개성을 중시한 교육’을 표방한 1989년도의 지도요령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부터 학교도서관을 거점으로 한 어린이 독서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는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학교도서관 헌장』<sup>39)</sup>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과 발표 시기를 살펴보면 학습지도요령과 학교도서관의 상관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는 지도요령이 발표된 2년 후인 1991년 『학교도서관 헌장』을 발표하였으며, 이곳에서 독서의 중요성, 현대의 교육에서 학교도서관의 의미, 학교의 중심기관으로서의 학교도서관의 역할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자신의 과제를 발견하고, 정보를 탐색하며, 발표, 토론의 과정을 거쳐 창조적으로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학습 방법의 습득이 현 교육의 명제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1989년 발표된 학습지도요령에서 밝힌 교육의 방향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1998년(초·중학교)과 1999년(고등학교)에 각각 공지된 학습지도요령은 학교도서관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는데, ‘종합적 학습 시간’의 신설로 여유교육(ゆとり教育)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전 단계까지의 개정에서도 여유교육이 단계적으로 강화되었지만, 본 개정에서 학습내용이 대폭 삭감되고, 학교 수업의 주5일제가 실시되었으며, 종합적 학습 시간이 신설되는 등 이전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학습지도요령이 시행된 2002년을 여유교육의 원년이라고 평가한다.

종합적 학습시간의 신설 목적<sup>40)</sup>은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배우며,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학교도서관의 활용, 타 학교와의 연계, 공민관, 도서관, 박물관 등의 사회 교육시설 및 사회 교육단체 등과의 연계, 지역의 교재 및 학습환경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고안할 것’이라고 학습지도요령에 명기되어 있다. 이것은 곧 학교도서관의 미디어를 활용한 조사학습 기회 증가를 의미하며, 이러한 종합적

38) 根本 彰, “學校図書館の重要性を示唆する新指導要領,” 學校図書館, 通卷第693号(2008. 7), pp.15-18.

39) 図書館憲章, <<http://www.j-sla.or.jp/material/sla/post-33.html>> [cited 2011. 11. 5].

40) 田村 學, “總合的な學習の時間における學校図書館の活用,” 學校図書館, 通卷第702号(2009. 4), pp.56-58.

인 학습시간의 개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의 재정비가 급선무의 과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학교도서관 관련 사업과 법의 제정 및 개정이 더욱 탄력을 받으며 진행될 수 있었다.

2008년에 발표된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종합적 학습시간이 3분의 2정도로 줄었고, 이전의 개정에서 줄어든 수업 시간 때문에 비판을 받았던 산수·수학 및 이과의 표준 시간수가 20% 정도 증가하는 등 다시 예전의 계통주의적 커리큘럼으로 역행하려는 징후들이 보였다.<sup>41)</sup> 그러나 지식기반사회의 전환을 전제로 종합적 학습시간과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그에 따른 활발한 활동은 기대해 볼 만 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는 학교도서관의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률과 정책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법적 강제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강제성의 여부를 떠나 학교도서관의 운영과 관리에 큰 틀을 마련해주고 있고, 또한 후술할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법률과 정책들이 제정되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사회적 관심을 모아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해 온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의 활동과 어린이 독서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한 후 초당파적으로 의원연맹을 결성해 행동에 들어간 국회의원들의 역할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Ⅲ.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

90년대 초반부터 활발하게 진행된 학교도서관 관련 사업은 크게 ① 개별 학교도서관의 정보화 및 충실화 사업, ②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화 사업, ③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문부과학성의 개괄적인 사업 가이드라인에 입각하여 기술·제출된 사업계획서 중, 심사과정을 통해 선발된 지역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으며, 사업의 진행과정 및 성과는 공개되었다.

본 장에서는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였던 지역들의 실례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도서관 관련 사업들을 소개하고,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던 2000년대의 학교도서관 발전 변화 추이를 문부과학성의 학교도서관 현황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 1. 학교도서관 정보화·활성화 추진 모델지역 사업(1995년-2000년)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학교도서관의 학습 정보 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활성화시키

41) 根本 彰, 전개논문, p.17.

기 위하여 시행된 사업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① 학교도서관에 컴퓨터 등의 정보 수단 및 다양한 정보 소프트웨어를 정비하여 학생들의 학습에서의 활용을 도모하는 것과 ② 타 도서관과의 네트워크화를 촉진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본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는 상기의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워 사업을 진행하였다. <표 5><sup>42)</sup>는 사업에 참여한 우리와시(浦和市)의 3년간의 사업 계획 내용이다.

<표 5> 학교도서관 정보화·활성화 추진 모델 지역사업 계획 - 우라와시(浦和市)

	정보수단 및 정보 소프트웨어의 정비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아동도서관의 전자도서관의 활용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도서관 관리 시스템의 조사연구</li> <li>• 학습용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소프트웨어의 선택·정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초·중학교, 교육연구소와의 네트워크 구축</li> <li>• 시립도서관의 컴퓨터화(コンピュータ化)의 조사·준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의 문화 특성을 고려한 멀티미디어 교재 활용의 시행</li> <li>• 네트워크 환경하에서의 교육정보 등의 수집·정리 등</li> </ul>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도서관 관리 시스템의 설치</li> <li>• 학교도서관과 시립도서관, 교육연구소와의 접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립도서관 컴퓨터 시스템의 개발</li> <li>• 시립도서관의 네트워크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를 위한 검색 시스템의 이용</li> <li>• 인터넷 브라우저 등의 이용</li> </ul>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등의 멀티미디어 이용의 수 업실천</li> <li>• 국제어린이도서관 등과의 접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학교와 시립도서관, 교육연구소와의 네트워크 및 인터넷 등의 이용에 의한 시스템 구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도서관의 전자도서관'과 '어린이 영상 도서관' 시스템의 이용</li> </ul>

## 2. 학교도서관 자원공유 네트워크 추진 사업<sup>43)</sup>(2004년-2006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에 걸쳐 문부과학성에 의하여 추진된 학교도서관 자원의 공동 이용 촉진 사업으로, 학교도서관 자원공유형 모델 지역사업<sup>44)</sup>의 후속사업이다.

본 사업에서는 ① 공공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교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역할, ② 지역내의 학교도서관의 장서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③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수한 교육실천이 연구·조사되었다. <표 6><sup>45)</sup>은 요시다마치(吉田町)의 기본 계획 및 구체적인 사업 시책이다.

42) 浦和市學校図書館情報化・活性化推進モデル地域事業全体計書,

<<http://www.saitama-city.ed.jp/tosyo/jouhouka/zentai.htm>> [cited 2011. 11. 13].

43) 學校図書館資源共有ネットワーク推進事業,

<[http://www.mext.go.jp/a\\_menu/hyouka/kekka/03082902/010.pdf](http://www.mext.go.jp/a_menu/hyouka/kekka/03082902/010.pdf)> [cited 2011. 11. 22].

44) 각 학교 단위로 학교도서관 장서 관리를 전산화한 후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모델을 검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내 공통 사양으로 학교도서관 장서목록 등을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교내, 학교간, 공공도서관 등과의 온라인 상호검색기능 및 도서 운반 체제 등을 구축하여 학교도서관 장서의 공동 이용 기반을 마련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되었다.

45) 學校図書館資源共有型モデル地域事業計書, <<http://www.town.yoshida.shizuoka.jp/plan/file/tosyo/03.pdf>> [cited 2011. 11. 22].

〈표 6〉 학교 도서관 자원공유 네트워크 추진사업의 계획 및 시책 - 요시다마치(吉田町)

기본계획	시책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축	초립(町立) 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연계 <sup>46)</sup>
	학교간 상호대차 시스템 <sup>47)</sup> 의 구축
	초·중학교의 테마별 장서 리스트의 작성
연수를 통한 직원 의식의 고양	직원 협력체제 조성
	외부강사에 의한 직원연수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업의 연구	진행 방법의 연구 <sup>48)</sup>
	수업의 실천
독서 지도 방법의 연구	학교도서관 오리엔테이션
	책 탐험 여행
	독서의 날 지정
	독서 순간(旬間)에서 월간(月間)으로
학교도서관 운영 방법의 연구	독서 위원회 신문을 통한 정보교환
	'선생님들의 추천 책' 코너 설치
	작가별 책 코너 설치
자원봉사자 활동의 연구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책 읽어주기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책 읽어주기를 위한 강연회
	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한 책 읽어주기
	도서관의 게시

요시다마치(吉田町)의 경우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대출·반납 기간의 단축, 검색시간의 단축, 도서관 이용자수의 대출수 증가, 도서관의 개관시간 확대, 도서관을 사용한 수업의 증가, 도서위원의 출석률 향상, 공립도서관과의 연계 활발, 전교에 학교사서 배치 등의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 3. 학교도서관 도서정비 5개년계획(1993년-2011년 : 1차-3차)

1993년 제정된 『학교도서관 도서표준』은 학교도서관의 최저 장서수의 기준이며, 그 표준을 전국의 학교도서관이 채워나갈 수 있도록 책정한 것이 『학교도서관 도서정비 5개년계획』이다.

학교도서관의 장서수를 당시의 1.5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1993년 제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으며, 2007년의 제3차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또한 3차 5개년 계획은 갱신책수의 도서수를 새롭게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1차, 2차와 구별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각 학교 도서

46) ① 인터넷상의 예약접수, ② 초립 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으로의 대출·반납 시스템, ③ 학교도서관지원

47) ① 학교도서관 전체 계획의 검토, ② 책의 분담 수서, ③ 대출방법-순회차

48) ① 자원공유 네트워크 위원회에서 수업의 구상 및 순서 연구, ② 자원공유 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한 자료 입수 연구, ③ 학생 지도법의 연구, ④ 자료의 기록 연구

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서폐기를 포함한 도서갱신이 도서 표준 달성률을 낮추고 있다는 문부와 학성의 지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도서정비비는 모두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배부되어지기 때문에 계획의 취지에 맞게 반드시 예산이 사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2011년 5월에 전국 1,799개의 지자체(市區町村)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도서관 도서정비비에 근거한 각 자치단체에서의 학교도서관 예산화 현황」을 살펴보면 이하의 <표 7><sup>49)</sup>과 같이 「학교도서관 도서정비비」의 지방교부세 조치에 근거하여 도서비를 당초 예산으로 예산화 한 지자체의 비율이 여전히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학교도서관 예산화 현황

예산화 현황	2011년
학교도서관 도서정비비의 지방교부세 조치에 근거하여 도서비를 당초 예산으로 예산화한 지자체	198곳(24.6%)
학교도서관 도서정비비의 지방교부세 조치에 근거하여 도서비를 보정 예산으로 예산화할 예정인 지자체	6곳(0.7%)
학교도서관 도서정비비의 지방교부세 조치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도서비를 예산화한 지자체	552곳(68.5%)
무응답	56곳(6.9%)

\* 복수 응답 가능

또한 2011년 6월에 발표된 「학교도서관 현황에 관한 조사」<sup>50)</sup>에 따르면, 2009년도 말 도서표준 달성 학교수의 비율이 초등학교 50.6%, 중학교 42.7%로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여년간 꾸준히 도서표준 달성 학교수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sup>51)</sup>

#### 4.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추진사업<sup>52)</sup>(2006년-2009년)

학교도서관의 독서센터로서의 기능과 학습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되었다. 지정 지역내의 교육 센터 등에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곳에 학교도서관 지원 직원을 배치하여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지원하였다. 또한 동시에 지정을

49) 「學校図書館図書整備費」に基づく各自治体での學校図書館図書費予算化の現状, <<http://www.j-sla.or.jp/material/research/post-45.html>> [cited 2011. 11. 21].

50) 「平成22年度學校図書館現状に関する調査」結果について(概要), <[http://www.mext.go.jp/b\\_menu/houdou/23/06/\\_jcsFiles/afiedfile/2011/06/02/1306743\\_01.pdf](http://www.mext.go.jp/b_menu/houdou/23/06/_jcsFiles/afiedfile/2011/06/02/1306743_01.pdf)> [cited 2011. 10. 30].

51) 2004년 - 초37.8% 중32.4%, 2005년 - 초40.1% 중34.9%, 2006년 - 초42.0% 중 36.8%, 2007년 - 초등학교 45.7%, 중학교 39.4%(각년도 문부과학성의 학교도서관현황에 관한 조사 참고).

52) 學校図書館支援センター推進事業, <[http://www.mext.go.jp/a\\_menu/hyouka/kekka/05090202/015.pdf](http://www.mext.go.jp/a_menu/hyouka/kekka/05090202/015.pdf)> [cited 2011. 11. 1].

받은 지역의 각 학교에 협력원을 배치하여, 학교도서관 스텝과의 연계·협력 하에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며, 지정 지역에서 얻어진 조사 연구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보급·정착시키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다.

지원하는 내용은 크게 ① 학교도서관간의 연계를 위한 지원, ② 각 학교의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지원, ③ 학교도서관의 지역 개방에 대한 지원, ④ 도서의 선정·수집, 자료의 조직화 등에 대한 지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찌카와시(市川市)에서 실시된 조사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53)</sup>

〈표 8〉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추진사업 : 방침 및 시책 - 이찌카와시(市川市)

기본계획	시책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활용한 독서활동 및 학습 활동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도서관인의 근무시간 증가(협력원의 배치)로 도서관 운영의 충실을 기하고,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활동 및 학습활동의 적극 지원</li> <li>• 지원 스텝의 지원·파견</li> <li>• 책을 좋아하는 어린이의 육성, 언어력을 양성하는 독서활동 및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수업 조성의 실천 연구</li> </ul>
학교도서관간과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등의 관계 기관과의 연계	<p>도서상호대차시스템(물류·정보 네트워크)을 정비하고, 도서 등의 공유화를 도모하며 도서관 활용을 넓힌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 네트워크의 운영</li> <li>• 정보 네트워크의 운영</li> <li>• 중앙도서관의 학교서비스 사업</li> </ul>
학교도서관의 지역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인재 등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을 지원하는 인간 네트워크 정보'의 작성 및 활용 - 다양한 전문 지식과 기능, 경험을 가진 개인이나 기관의 등록, 정보제공</li> <li>• 지역 독서 자원봉사자의 소개 및 활용</li> </ul>
사서 교류를 시작으로 한 교직원 연수 또는 정보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도서관 합동연수회(연간 3회)의 실시</li> <li>• 연구협력교에서의 교직원 연수회의 실시</li> <li>• 학교사서 연수회, 학교도서관인 연수회(각연간 5회) 실시</li> <li>• 각 학교에서의 학교도서관 운영조직의 정비·충실</li> </ul>
그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통신'의 작성·배포(매월 1회)</li> <li>• '학교도서관 체크리스트'에 의한 자기 평가와 정리</li> <li>• '신임 학교도서관인 컴퓨터 연수회'의 실시</li> <li>• '이찌카와시의 학교도서관'의 작성·배포</li> <li>• 향토학습·연수자료의 작성·배포</li> </ul>

#### 5. 어린이 독서 응원 프로젝트<sup>54)</sup>(2007년-2009년)

어린이 및 보호자가 가까운 지역에서 스스로 참가하고, 체험하며 독서의 중요성 등을 실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었

53) 市川市教育委員會報告書, <<http://www.pref.chiba.lg.jp/kyouiku/shidou/gakuryoku/dokusyo/documents/ichikawa.pdf>> [cited 2011. 11. 4].

54) 子ども読書応援プロジェクト, <[http://www.mext.go.jp/a\\_menu/hyouka/kekka/06091508/034.pdf](http://www.mext.go.jp/a_menu/hyouka/kekka/06091508/034.pdf)> [cited 2011. 11. 2].

으나, 2009년 11월에 사업구분(事業仕分け)<sup>55)</sup>으로 중도 폐지되었다. 다음의 <표 9><sup>56)</sup>는 문부과학성에서 2009년 공표한 사업계획의 내용이다.

<표 9> 어린이 독서 응원 프로젝트 사업 내용

기본 계획	구체적 시책	비고
어린이 독서응원단 추진사업	• 다양한 지역 활동과 연계하여 어린이 독서 응원단의 과업 등을 실시 • 어린이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독서 활동을 이해시키는 효과적인 사업들을 조사·연구한다.	2007년 신설, 2009년까지 확대 실시
어린이 독서지역 프론티어 사업	• 독서 자원봉사자의 양성 및 계발광고를 전개	
어린이 독서정보 스테이션 사업	• 어린이의 독서활동을 응원하는 전국적인 정보사이트의 개설 • 어린이의 독서활동 추진 포스터의 작성 및 배포	
어린이 독서 지역 스크럼 사업	• 지역의 행정, 도서관, 공민관, 학교, PTA, 기업 등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원활한 어린이 독서 활동 제반 환경을 정비한다.	2009년 신설
어린이 독서추진에 관한 평가·분석 사업	•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 사업에 관하여 그 결과 등을 평가·분석함과 동시에, 어린이 독서활동에 관한 새로운 지표 등에 관하여 검토한다.	

문부과학성은 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린이의 독서 정보를 게재한 홈페이지 「어린이 독서 정보관」<sup>57)</sup>을 2008년 2월에 개설하여, 어린이와 보호자는 물론 지역의 자원봉사자 및 도서관 관계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어린이 독서활동에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 국가 및 공공단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 6. 학교도서관 활성화 추진 종합사업<sup>58)</sup>(2009년-2012년)

학교도서관의 활발한 이용을 위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주체적인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교직원들에 대한 서포트 기능을 강화하며, 학생들의 독서습관 정착 등에 필요한 유효한 시책들을 시험적으로 실시하여 그 성과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본 사업의 기본 방침은 크게 <표 10>과 같이 ① 학교도서관의 활용 고도화를 향한 실천 연구, ② 학생들의 독서습관 확립을 향한 실천 연구, ③ 향후 학교도서관 활용 방향에 관한 조사연구와 광고계발로 구성되어 있다.

55) 공개적으로 각 행정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 필요, 불필요를 판정 논의하여 '그대로 집행', '예산감축', '수정', '폐지'로 분류하는 작업.

56) 子ども読書応援プロジェクト, <[http://www.mext.go.jp/a\\_menu/hyouka/kekka/08100105/033.htm](http://www.mext.go.jp/a_menu/hyouka/kekka/08100105/033.htm)> [cited 2011. 10. 18].

57) 子ども読書の情報館, <<http://www.kodomodokusyo.go.jp/>> [cited 2011. 11. 5].

58) 学校図書館の活性化推進総合計画(新規), <[http://www.mext.go.jp/a\\_menu/hyouka/kekka/08100105/020.htm](http://www.mext.go.jp/a_menu/hyouka/kekka/08100105/020.htm)> [cited 2011. 11. 7].



〈표 10〉 학교도서관 활성화 추진 종합 사업의 기본 방침 및 시책

기본 계획	시책
학교도서관의 활용 고도화를 향한 실천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방법을 배우는 장소로서의 학교도서관 기능강화 프로젝트</li> <li>• 교원의 서포트 기능 강화를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프로젝트</li> <li>• 지역에 뿌리내린 학교도서관의 방과후 개방 프로젝트</li> </ul>
학생들의 독서습관 확립을 위한 실천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 독서 거리' 조성 추진 프로젝트</li> </ul>
향후 학교도서관 활용 방향에 관한 조사연구와 광고개발	

이 중 '지역에 뿌린 내린 학교도서관의 방과후 개방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방과후에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타학교의 학생 및 지역 주민에게도 학교도서관을 개방함으로써 학년, 세대를 초월한 다양한 사람들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책을 매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소로서도 학교도서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학교도서관의 공간과 독서·학습이라는 학교도서관의 본연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적으로 학교도서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1〉<sup>59)</sup>은 본 사업에 관한 아키타현(秋田縣)의 쓰루마이초등학교(鶴舞小學校)의 활성화 계획 및 성과이며, 이러한 내용을 집약하여 전국에 발신함으로 사업에 참여한 64지역의 학교도서관은 물론, 참여하지 못한 지역의 학교도서관까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1〉 학교도서관 활성화 추진 종합사업의 내용 및 성과 - 쓰루마이초등학교(鶴舞小學校)

기본 계획	시책	성과
각 교과 등, 일상의 수업에서 학교도서관 이용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이용 지도</li> <li>• 도서관 이용 실태의 연구 및 연간지도 계획의 작성</li> <li>• '조사학습 코너' 등의 환경 정비</li> <li>• 사서 교유과 연계한 수업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의 의식, 학습의욕의 향상: 배우는 방법을 익히는 학교도서관의 이미지가 커지며, 도서를 활용한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li> </ul>
조사 학습에 도움이 되는 학교도서관으로의 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트라이앵글 플랜의 활용(공공도서관(현립도서관), 시내의 각 초·중학교, 시교육연구소가 서로 연합하여 수업에 활용하고 싶은 도서를 소개하고, 정보검색, 자료의 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li> <li>• 학습지도안과 활용 가능한 참고도서 열람 자료의 축적</li> <li>• 도서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와 도서관의 환경 정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의식 개혁: 학교도서관을 통해 교재 연구를 더욱 깊이 할 수 있고, 이것이 수업의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게 되었다.</li> <li>•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환경 정비: '어린이 독서 꿈 플랜 사업'을 통하여 파견 사서가 배치되고, 학교도서관 지원 인력이 배치되었으며, 도서관의 환경도 학습정보 센터로서 부족함이 없게 정비되었다.</li> </ul>

이상에서 살펴본 각각의 사업들이 일본 전체의 학교도서관 발전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

59) 學校図書館の活性化推進總事業の最終報告書, 〈<http://www.pref.akita.lg.jp/www/contents/1297051584072/files/jigyohoukokusyo.pdf>〉 [cited 2011. 11. 3].

는가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문부과학성에 의해 발표된 「학교도서관 현황에 관한 조사」에서 각 사업과 관련 있는 항목의 수치 변화를 살펴보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2000년대에 학교도서관이 꾸준히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표 12〉 참조), 이러한 발전은 전장에서 기술한 독서활동 관련 법률의 제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12〉 2000년대 학교도서관의 발전 추이 : 학교도서관 현황에 관한 조사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교 독서활동	초	84%	88.2%	88.5%	91.3%	93.7%	94.4%	96.6%	**	96.2%
	중	70%	74.4%	73.9%	78%	81.2%	84.1%	86.9%	**	87.5%
	고	30.2%	33%	32.1%	34.7%	37.8%	36.9%	39.7%	**	41.1%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초	53.6%	56.9%	57.3%	60.5%	62.6%	64.9%	68.6%	**	73.8%
	중	34.1%	35.5%	32.6%	34.8%	37.6%	40.6%	36.4%	**	45.4%
	고	28.3%	30.5%	29.1%	30.6%	34.6%	36.0%	33.8%	**	44.5%
한 학교당 장서수(권)	초	6,809	6,930	7,082	7,312	7,398	7,606	7,838	8,018	**
	중	8,381	8,572	8,767	9,040	9,322	9,541	9,578	9,805	**
	고	20,707	20,954	21,362	21,771	21,816	22,323	21,902	22,128	**
도서표준 달성	초	34.8%	36%	37.8%	40.1%	42.0%	45.2%	**	50.6%	**
	중	29%	30.8%	32.4%	34.9%	36.8%	39.4%	**	42.7%	**
장서 데이터베이스화의 상황*	초	23.4%	31%	29.7%	33.9%	37.6%	41.1%	44.5%	**	51.2%
	중	23.9%	30.5%	30.1%	34.1%	38.5%	40.7%	44.7%	**	50.7%
	고	55.5%	64.3%	64.2%	68.2%	71.6%	75.7%	77.9%	**	84.3%

\* 1%라도 데이터베이스화를 실시한 학교의 비율

\*\* 2010년에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2008년 이후의 수치가 일부 없음

#### IV. 학교도서관 발전의 원동력이 된 표준과 기준

일본 최초의 학교도서관 기준은 1959년 문부성이 간행한 「학교도서관 운영의 입문(學校図書館運營の手引き)」에 수록된 「학교도서관기준」인데, 이는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가 기초하여 제안하고, 문부성이 1949년 채택하여 1959년 일부 개정한 것이다. 이 기준은 오랜 기간 일본 학교도서관의 운영과 관리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어왔으며, 이후 일본에서는 달라진 시대상황과 다양해진 도서관 매체를 포용할 수 있는 여러 표준이 제정·발표되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다양한 표준 및 기준을 소개한다.

1. 학교도서관 도서표준<sup>60)</sup>

1959년 문부성이 발표한 『학교도서관기준』은 현재의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1993년 3월 공립의무교육학교의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장서의 표준을 새롭게 책정하였는데, 이것이 『학교도서관 도서표준』이다. 이 표준을 참고하여 학교도서관의 도서 정비 상황 및 실정에 맞추어 계획적으로 도서 정비를 하도록 학교도서관에 권고하고 있다.

1959년 발표된 『학교도서관기준』은 국가차원의 포괄적 기준이며 학교도서관의 정비와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 전반에 걸쳐 제시한 지도적 기준이다. 또한 운영의 자세한 사항을 구체적 수치로 포괄하여 제시한 양적 기준<sup>61)</sup>인데, 이러한 특징은 본 『학교도서관 도서표준』에도 적용 가능하다. 이하에 특별지원학교를 포함한 초등학교, 중학교의 도서표준을 소개한다.

가. 초등학교

〈표 13〉 학교도서관 도서표준 - 초등학교

학급수	장서수
1	2,400
2	3,000
3~6	$3,000 + 520 \times (\text{학급수} - 2)$
7~12	$5,080 + 480 \times (\text{학급수} - 6)$
13~18	$7,960 + 400 \times (\text{학급수} - 12)$
19~30	$10,360 + 200 \times (\text{학급수} - 18)$
31~	$12,760 + 120 \times (\text{학급수} - 30)$

이 표준은 최저 기준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학급수가 18학급인 초등학교 학교도서관의 경우 최소 10,360권( $7,960 + 400 \times (18-12)$ ) 이상의 도서를 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나. 중학교

〈표 14〉 학교도서관 도서표준 - 중학교

학급수	장서수
1~2	4,800
3~6	$4,800 + 640 \times (\text{학급수} - 2)$

60) 學校図書館図書標準, 〈[http://www.mext.go.jp/a\\_menu/sports/dokusyo/hourei/cont\\_001/016.htm](http://www.mext.go.jp/a_menu/sports/dokusyo/hourei/cont_001/016.htm)〉 [cited 2011. 11. 21].

61) 김효정, “영국·미국·일본의 학교도서관 기준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25권(2006), pp.51-82.

학급수	장서수
7~12	$7,360 + 560 \times (\text{학급수} - 6)$
13~18	$10,720 + 480 \times (\text{학급수} - 12)$
19~30	$13,600 + 320 \times (\text{학급수} - 18)$
31~	$17,440 + 160 \times (\text{학급수} - 30)$

다. 특별지원학교(초등학교)

〈표 15〉 학교도서관 도서표준 - 특별지원학교(초등학교)

학급수	장서수	
	시각장애인에 대한 교육만을 실시하는 특별지원학교(맹인학교)	시각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특별지원학교(농아학교, 양호학교 <sup>62)</sup> )
1	2,400	2,400
2	2,600	2,520
3~6	$2,600 + 173 \times (\text{학급수} - 2)$	$2,520 + 104 \times (\text{학급수} - 2)$
7~12	$3,292 + 160 \times (\text{학급수} - 6)$	$2,936 + 96 \times (\text{학급수} - 6)$
13~18	$4,252 + 133 \times (\text{학급수} - 12)$	$3,512 + 80 \times (\text{학급수} - 12)$
19~30	$5,050 + 67 \times (\text{학급수} - 18)$	$3,992 + 40 \times (\text{학급수} - 18)$
31~	$5,854 + 40 \times (\text{학급수} - 30)$	$4,472 + 24 \times (\text{학급수} - 30)$

라. 특별지원학교(중학교)

〈표 16〉 학교도서관 도서표준 - 특별지원학교(중학교)

학급수	장서수	
	시각장애인에 대한 교육만을 실시하는 특별지원학교(맹인학교)	시각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특별지원학교(농아학교, 양호학교)
1~2	4,800	4,800
3~6	$4,800 + 213 \times (\text{학급수} - 2)$	$4,800 + 128 \times (\text{학급수} - 2)$
7~12	$5,652 + 187 \times (\text{학급수} - 6)$	$5,312 + 112 \times (\text{학급수} - 6)$
13~18	$6,774 + 160 \times (\text{학급수} - 12)$	$5,984 + 96 \times (\text{학급수} - 12)$
19~30	$7,734 + 107 \times (\text{학급수} - 18)$	$6,560 + 64 \times (\text{학급수} - 18)$
31~	$9,018 + 53 \times (\text{학급수} - 30)$	$7,328 + 32 \times (\text{학급수} - 30)$

62) 지적장애아동·지체부자유아동·병약아동·허약아동 등에 대하여 보통학교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에 의한 곤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기능 등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 2. 학교도서관 도서 폐기 기준<sup>63)</sup>

이 기준은 학교도서관에서 장서를 평가하여 폐기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으로 1993년 1월에 제정되었다. 「일반 규칙」과 「종별 규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연감, 백서, 향토자료, 귀중자료는 폐기 대상 자료에서 제외된다.

일반 규칙은 ① 사용하는 데에는 물리적으로 전혀 지장이 없으나, 기술되어진 내용, 자료, 표기 등이 오래되어 이용 가치가 상실된 도서, ② 새로운 학설이나 이론이 채용되어있지 않고, 사적 자료로서도 이용 가치가 상실된 도서, ③ 간행 후 시간의 경과와 함께 컬러 도판자료의 변색이 심각하여 틀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도서, ④ 이용 빈도가 현저하게 낮은 복본으로 보존분을 제외한 도서이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도서는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종별 규칙은 ‘백과사전·전문사전’, ‘팸플렛·요람’, ‘전기’, ‘지도책’, ‘여행안내서’ 등<sup>64)</sup>이 있으며, 각각의 종별에 따른 폐기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종별 규칙의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의 <표 17>과 같다.

<표 17> 학교도서관 도서 폐기 기준

종별규칙	백과사전·전문사전	•발행 후 10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유권이 간행되지 않은 도서
	팸플렛·요람	•신판이 간행되어 이용 가치가 상실된 구판 도서
	전기	•신자료의 발견 등에 의하여 피전자에 대한 평가가 현저하게 바뀐 도서
	지도책	•간행 후 5년이 경과한 것으로, 기재 지명 등에 변화가 생긴 도서 •역사 지도책의 경우, 간행후 10년이 경과한 것으로 역사학 연구의 성과가 다루어지지 않은 도서
	여행안내서	•간행 후 3년이 경과한 것으로, 현재의 상황에 맞지 않는 도서

### 3. 학교도서관 평가기준<sup>65)</sup>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2006년<sup>66)</sup> 책정한 표준적 평가 기준이다. 이 기준의 목적은 학교도서관의 경영, 운영, 활동 및 환경 등에 관한 개선점을 명확하게 하여 다음 연도의 도서관 경영과 운영에 활용하는 데에 있다. 학교 현장에서 오랜 기간에 걸친 실천과 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매우 실용적인 기준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63) 學校図書館図書廢棄基準, <<http://www.j-sla.or.jp/material/kijun/post-36.html>> [cited 2011. 11. 21].

64) 이 외에 ‘지지(地誌)’, ‘법률서·법령서’, ‘인권관계서’, ‘정당관계서’, ‘시사문제관계서’, ‘학습참고서’, ‘취직·수험내용서’, ‘기술서·실험서’, ‘공해·환경문제관계서’, ‘요리·복장관계서’, ‘스포츠 관계서’, ‘사전’, ‘번역서·번안서·초역서(抄譯)’가 있다.

65) 學校図書館評価基準, <<http://www.j-sla.or.jp/material/kijun/post-44.html>> [cited 2011. 11. 8].

66) 2006년 제35회 전국학교도서관연구대회에서 초안을 발표하고, 2009년에 공식적으로 발표함.

평가 기준은 <표 18>과 같이 크게 14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항목은 하위 항목으로 세분되어 있다. 또한 각각의 하위 항목은 3단계로 구분되어,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3점에서 1점까지의 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제1항목인 『학교도서관이 기본 이념』의 하위 항목인 『유네스코 학교도서관 선언』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유네스코 학교도서관 선언의 이념을 전교직원이 이해하고, 담당자는 경영 및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 3점
- 2) 유네스코 학교도서관 선언의 이념을 담당자가 이해하고 경영 및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 2점
- 3) 유네스코 학교도서관 선언을 담당자가 모르고 있다. - 1점

<표 18> 학교도서관 평가기준

평가기준	하위 항목
학교도서관의 기본 이념	『유네스코 학교도서관 선언』 외 2항목
경영	『학교도서관의 경영 방침·중점 목표 등』 외 6항목
학교도서관 담당자	『학교도서관 담당자』 외 3항목
학교도서관 미디어	『미디어의 종류』 외 11항목
시설과 환경	『학교도서관 전용 시설』 외 18항목
운영	『학교도서관의 운영방침』 외 9항목
서비스	『대출·반납』 외 4항목
교육지도·원조	『연간학습지도계획』 외 8항목
협력체제·커뮤니케이션	『직원회의에서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검토』 외 4항목
지역과의 연계	『지역 개방』 외 2항목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의 모집』 외 2항목
타 단체·기관과의 연계·협력	『공공도서관의 이용(공민관 도서실 등을 포함)』 외 8항목
학생도서(관)위원회	위상
연수	『교육위원회 주최의 연구·연수회의 참가』 외 2항목

#### 4. 학교도서관 홈페이지 평가기준<sup>67)</sup>

인터넷을 통한 학습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학습에 도움이 되며, 이용자 친화적인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는 2005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학교도서관 홈페이지 평가기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평가 기준은 아래의 <표 19>와 같으며, 전문적인 지식 없이 이용가능한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였는지, 가능한 적은 항목수를 사용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는지에 중점을 두어서 제정되었다.

67) 學校図書館ホームページ評価基準, <<http://www.j-sla.or.jp/pdfs/material/hyoka.pdf>> [cited 2011. 11. 20].

〈표 19〉 학교도서관 홈페이지 평가기준

평가기준	하위 항목
톱 페이지	「내용을 알기 쉽도록 제목이 붙어 있는가」의 6항목
제작자	「제작자명(개인명, 또는 단체명)을 명기하고 있는가」의 3항목
내용	「내용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인가」의 22항목
조작성	「내용을 보는데 필요한 신뢰할만한 소프트웨어가 쉽게 다운로드 되는가」의 3항목
디자인	「필요한 정보가 과부족하지 않고, 친숙해지기 쉬운가」의 7항목
안정성	「제작자에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의 2항목

이상에서 소개한 기준 및 표준 이외에도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가 제정·발표한 것으로 「그림책 선정기준」, 「컴퓨터·소프트웨어 선정기준」, 「학교도서관 시설기준」, 「학교도서관 미디어기준」, 「도서선정기준」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 기준은 한국도서관협회의 「한국도서관기준 : 학교도서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학교도서관 길라잡이」와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에 관한 기준」, 교육인적자부(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도서관 운영편람」이 있고, 이중 2001년 제정된 「학교도서관 길라잡이」가 학교도서관에 관한 최초의 단독 기준이다.<sup>68)</sup> 1959년 학교도서관의 단독 기준을 제정한 일본과 비교하면 상당히 늦은 출발이고, 일본과 다르게 예산편성, 교육서비스, 자료, 인력, 시설·서비스 등의 다양한 항목을 하나의 기준 안에서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쉽게 개정되기가 쉽지 않다. 일본의 경우 상술한 것과 같이 각각의 기준이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에 의해 독립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기준의 최신성 확보에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 V.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본 장에서는 일본 학교도서관의 대표적인 실태조사인 문부과학성의 「학교도서관 현황에 관한 조사」와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 「학교독서조사」에 관하여 소개한다.

### 1. 학교도서관 현황에 관한 조사

문부과학성에서 실시하는 조사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지원학교 및 중등교육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유 등의 배치상황, 도서의 정비 상황, 독서활동의 상황 등을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다.

68) 목수정, 전계논문, p.225.

일본 학교도서관의 발전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전술했던 학교도서관 관련 사업들이 학교도서관의 각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2011년 6월에 발표된 가장 최근의 조사 결과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sup>69)</sup>

- 1) 사서교유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는 12학급 이상의 학교에서의 발령 상태는, 초·중학교에서는 약간의 증가, 또는 전회와 동치였으나, 고등학교에서는 약간 감소하였다.
- 2) 장서수는 초·중학교에서는 증가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감소하였다. 또한 학교도서관도서 표준을 달성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의 비율은 초·중학교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아직은 많이 미흡한 상황이다.
- 3) 독서활동의 상황에 대하여는 많은 초·중학교에서 전교가 일제히 독서활동을 실시하는 등 대체적으로 활발히 진행된다고 생각된다.

## 2. 학교 독서 조사

본 조사는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의 독서 상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학교도서관법이 시행되었던 1954년부터 매년 실시되었다. 1993년까지는 문부성의 주도로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1994년부터는 문부성의 위탁을 받은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가 마이니치 신문사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 내용은 매년 공통되는 것과, 특설된 것이 있다. 「5월 한달간 읽은 책수」, 「읽은 책의 제목」, 「5월 한달간 읽은 잡지수」, 「평소 읽고 있는 잡지명」이 공통된 항목이며, 2010년 실시된 56회 조사에서 특설된 항목은 「조사 학습」, 「독서의 이미지」, 「국민독서의 해」, 「책을 고르는 기준」 등이다.

이 조사에 관한 보고서는 매년 마이니치 신문에 의해 발행되어 초·중·고등학생의 독서 상태 및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VI. 요약 및 결론

###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에 제정·개정된 학교도서관 및 독서활동 관련 법률과 사업 등을 소개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는 학교도서관 발전의 기반이 되는 법률과 정책이 다수 존재하며, 이러한 법률과

69) 平成22年度 「學校図書館の現状に関する調査」の結果について,  
<[http://www.mext.go.jp/b\\_menu/houdou/23/06/1306743.htm](http://www.mext.go.jp/b_menu/houdou/23/06/1306743.htm)> [cited 2011. 11. 2].



정책들은 관련 단체들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며, 학교도서관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독서활동의 추진에 관한 법률」과 「문자·활자 문화진흥법」 등의 실효성에 관한 한 계성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의 더 많은 노력과 지자체의 협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둘째,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국가기관(문부과학성)의 책임 하에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교도서관 관련 사업들은 명칭과 성향은 상이하지만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계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사업은 문부과학성의 책임 주도하에 ① 개별 학교도서관의 정보화 및 충실화 사업, ② 타기관과의 네트워크화 사업, ③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의 큰 범주 안에서 서로 연계·답습하며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처럼 모든 사업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며 추진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기관인 문부과학성의 단일 주도하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이러한 연계 사업은 2000년대의 학교도서관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전문단체(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는 학교도서관 관련 기준 및 표준들을 꾸준히 개발, 보급하였으며,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학교도서관 발전의 밑거름을 마련하였다.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는 법적인 정비와 개선운동을 통하여 사서교사 및 학교사서의 확대배치와 지위보장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 평가기준, 홈페이지 평가기준, 도서폐기 기준 등을 제정하였으며, 학교도서관 관련 통계자료와 교육·연구·발간 사업을 실시하는 등 학교도서관 발전을 선도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민간 사회단체 활동의 전형적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다.<sup>70)</sup>

상기와 같이 일본의 학교도서관은 거시환경의 제정비를 통하여 시대 상황과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 2. 결론

90년대 초반부터 일본에서는 아동들의 문자이탈·독서기피 현상이 뚜렷해지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국제적 학력 테스트인 OECD의 PISA의 조사결과에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더 이상 독서를 개인의 문제로 방치해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어린이 독서환경의 제정비와 독서활동 전반에 걸친 범국가적인 참여가 요구되기 시작하여 학교도서관 및 어린이 독서활동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과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때 국가기관과 전문단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일관성 있는 사업진행을 주도하며, 관련 단체들의 협력을 유도하여 나라전체가 어린이 독서활동에 관심을

70) 도서도서관 연구소, “주요국 도서관법,” 도서관연구소 웹진, 제10권(2008. 2), pp.1-7.  
 <[http://webzine.nl.go.kr/publish/kriii/200802\\_01/pdf/librarylaw\\_0226.pdf](http://webzine.nl.go.kr/publish/kriii/200802_01/pdf/librarylaw_0226.pdf)> [인용 2011. 11. 22].

가질 수 있도록 한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또한 관련법 제정을 통하여 이 두 단체의 활동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의원연맹 역시 학교도서관 발전에 큰 몫을 감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어린이 독서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1993년 초당파적으로 『어린이와 책의 의원연맹』을 결성하였으며, 2년 후인 1995년 『국제어린이도서관 설립추진의원연맹』<sup>71)</sup>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국제어린이도서관이 설립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2000년을 어린이 독서의 해로 지정하였고, 어린이의 독서활동에 관련된 제반 활동에 힘쓰며, 2001년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어린이 독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선언하고 어린이의 독서진흥을 위한 국가의 재정상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sup>72)</sup> 또한 2005년에도 초당파적으로 결성된 활자문화의원연맹의 활약으로 『문자·활자 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독서활동 지원 영역을 성인에까지 확대하기도 하였다.

학교도서관의 발전은 어느 한 단체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지휘 하에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지속할 때 학교도서관은 확고히 설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학교도서관인들의 안목과 관련 기관들의 발빠른 행동력이 현재의 우리나라 학교도서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71) 2000년 국제어린이도서관이 설립됨으로써 그 결성 취지는 충분히 달성하고 『어린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원연맹』으로 명칭을 변경.

72) 이선화, 미국과 일본의 어린이 독서진흥 정책 사례 비교(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p.61.